

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내규

제정 : 2012.03.01
개정 : 2015.03.01
개정 : 2019.07.10
개정 : 2021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0.01
개정 : 2022.12.01
개정 : 2023.02.15
개정 : 2023.10.16
개정 : 2024.03.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간호학과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3.10.16.>

제2조(교육과정운영위원회) 학과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. <개정 2019.07.10., 2021.03.01., 2023.10.16.>

제3조(구성) ①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되,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2.01.>

② 위원은 학과 교수회를 통해 의결하여 구성한다.

제4조(업무)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 개발
2.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
3. 교과과정 편성
4. 비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5. 학습성과와 관련된 사항 <개정 2019.07.10., 2021.03.01.>
6. 기타 교육과정 및 교과운영과 관련된 사항 <개정 2019.07.10.>
7. 학생의 졸업에 관한 사항 <신설 2021.03.01.><개정 2023.10.16.>
8. 편입학과 관련된 사항 <신설 2021.03.01.>
9. 「학칙 시행세칙」 제14조와 「교육과정 조정위원회규정」 제5조에 관한 사항

<신설 2021.03.01.> <개정 2021.12.01.>

10. 재학생 교육과정 운영 관련 만족도 관리 <신설 2023.10.16.>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학기 종료 후 개최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7.10.>

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7.10.>

③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4.03.01.>

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교수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4.03.01.>

제6조(보고) 위원장은 학과에서 심의·의결된 주요사항을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7조(경비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학과 예산에 편성된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9조(운영규정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과장이 승인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제2장 간호학과 교육과정 <신설 2019. 07. 10.>

제10조(이수허용학점) ① 학생은 매학기 13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23학점 이하까지 허용한다. 다만,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허용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7.10., 2023.10.16.>

제11조(수강신청) ① 수강 신청은 학기별로 소정의 기간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서에 정확히 기입한 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수강 신청 변경 및 포기원은 수업일 수 1/4선 이내에 제출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③ 복학·재입학·유급생의 수강신청은 복학·재입학·유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준

하여 신청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④ 복학·재입학·유급생의 재이수 대상 과목(필수교과목)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개설되지 않거나 폐강된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이 지정하는 유사과목 또는 대체 과목으로 수강신청 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⑤ <삭제 2023.10.16.>

⑥ <삭제 2023.10.16.>

제12조(재수강신청) ① 필수교과목을 낙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② 학점 미취득 교과목의 재수강은 필수교과목을 우선하여 수강신청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>

제13조(졸업)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「학칙」에 준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>

② 교양교과목은 최소 25학점 이상을 이수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3.02.15.>

③ 전공기초교과목은 인문사회과학 8학점 이상 이수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3.02.15.>

④ 전공교과목은 전공기초를 제외한 최소 65학점 이상, 최대 95학점 이하 이수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3.02.15.>

⑤ 각 교과 구분별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한다. <개정 2019.07.10., 2021.12.01., 2023.02.15.>

⑥ 2015-2018학년도 입학생의 졸업 기준은 입학년도 학교규정 및 교육과정에 준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⑦ 졸업유예와 관련된 사항은 대학의 졸업유예운영규정에 따른다. <신설2021.03.01., 2023.10.16.>

⑧ 편입의 경우 대학의 편입학 운영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전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현황이나 전공의 특성에 따라 추가 학기가 필요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<신설 2021.03.01.> <개정 2021.12.01.>

제3장 <삭제 2023.10.16.>

제14조 <삭제 2023.10.16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